

의안번호	제653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8월 23일

#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  
번호

653

제출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호우 피해 관련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필요성

- 7월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 바, 피해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필요

※ 과거 사례 : '20 집중호우 피해 관련 도세 감면 '22 이태원 사고 관련 도세 감면 '23 호우 피해 관련 도세 감면

#### 〈 피해현황('24. 7월 기준) 〉

- ▶ 사유시설 피해현황 : 건축물 171개소, 농경지 64.3ha, 농작물 683.8ha 등
- ▶ 피해금액 : 276억원(옥천 104억원, 영동 145억원 포함)

###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대상 : 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주민
- 감면율 : 면제(100%)
- 감면액 : (추계) 76건 4,160천원

## 3. 의안전문 : 불임

## 4. 관계법령 발취 : 불임

## 5. 비용추계서 : 불임

##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

- 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주민

※ 피해구분 기준은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의함

### 2. 감면세목 및 감면율 내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건축물 중 호우로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3. 기타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련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5.12.29.>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

**제147조(부과·징수)**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18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2024년 7월 호우 피해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피해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함

## 2. 비용 발생요인

- 2024년 7월 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3.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 전제 :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기준

###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

- ▶ 과세기준 : 매년 6월 1일
- ▶ 과세대상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 납부고지 : 재산세(7월, 9월)와 병기고지
- ▶ 세 율 : 0.04%~0.12%

- 추계 결과 : 76건 4,160천원

- 옥천 48건 2,302천원 / 영동 28건 1,858천원
- 주택 39건 611천원 / 건축물 37건 3,549천원

(단위 : 건, 천원)

합 계						옥 천						영 동					
합 계		주택		건축물		합 계		주택		건축물		합 계		주택		건축물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76	4,160	39	611	37	3,549	48	2,302	28	348	20	1,954	28	1,858	11	263	17	1,595

- 재원 조달 : 자연재난에 따른 감면으로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한시적 감면으로 연도별 추계 내역 없음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이 정 노